

의안번호	2126608
의 퇴 인	김은희의원
회 답 일	2024. 3. 5.
추 계 번호	24C0179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제1항 (기금의 사용 등)	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, 신고자·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연구·조사,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·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·훈련,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추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제1항 (기금의 사용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기금의 사용 등(안 제22조제1항)

-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급 사업,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,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,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, 체육단체 및 스포츠윤리센터 등의 운영·지원,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
-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근절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,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사업, 스포츠인권증진 및 비리예방 교육, 스포츠인권침해 실태조사, 스포츠인권침해 및 비리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]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사업 현황(2024년)

구분	사업내용	예산액(백만원)
스포츠 윤리강화	인권침해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	257
	인권증진 및 비리예방 홍보	80
	스포츠인권증진 및 비리예방 교육	744
	스포츠인권침해 실태조사	361
	통합신고시스템 운영 및 개선	700
스포츠 인권침해·비리조사	심의위원회 운영, 조사활동 및 법률 자문 등	775
지역사무소 운영	지역사무소 5개소 관리·운영	322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개정안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, 이와 관련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향후 확대될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